

## 정수기 [ ]제조업 [ ]수입판매업 [ ]신고서 [ ]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7일		
신청인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)		생년월일		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)		전화번호			
상 호						
소재지	(전화번호 : )					
제품명			모델			
여과방식			유효정수량(L)			
필터의 소재 및 규격	기능별	여과기능	흡착기능	살균기능	이온교환기능	기타
	소재명					
	규격					
검사항목	구조 및 재질					
	의무정수성능					
	선택정수성능					
수입판매의 경우	수입국(정수기 완제품 기준)			수출국		
	수입량			보관시설소재지		

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(변경 신고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정수기의 제조업 신고의 경우 가. 정수기의 품목·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.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다.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(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, 필터 공급방법,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)	2. 정수기의 수입판매업 신고의 경우 가. 사업계획서(수입처 포함) 나. 보관시설명세서 다.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.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	수수료 신고 : 30,000원 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7,000원) 변참고: 20,000원 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8,000원)
	3. 변경신고의 경우 가. 신고증명서 원본 나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	

### 처리절차

